

과태료 처분 고지서 공시송달
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.

2021. 5. 25.

용인소방서



1. 공고기간 : 2021. 5. 26. ~ 2021. 6. 9.(15일)

2. 공고내용

1. 제 목	과태료 처분 고지서		
2. 대 상 자	성 명	주 소	과태료 금액(원)
	황 명 석	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1길 18, 203동 1005호(월계2단지 주공아파트)	250,000원
3. 납 부 기 한	2021. 8. 31.까지		
4. 위 반 근 거	<input type="checkbox"/>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7조(과태료부과) <input type="checkbox"/>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 <input type="checkbox"/>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 제1항 제4호		
5. 문 의 처	기 관 명	용인소방서	담 당 자 김 지 흥
	주 소	경기도 용인시 명지로 45	연 락 처 031-8021-0392
6. 유의사항	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부과 및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 범위내에서 체납된 과태료의 1.2%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(지방세)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		